

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

서울행정법원은 ‘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’를 통하여 ‘국민이 바라는 사법부’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,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.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실시법원 : 서울행정법원
2. 모집인원 : 20명 내외
3. 모집기간 : 2015. 4. 3. ~ 5. 2.
4. 활동기간 : 2015. 5. 12. ~ 10. 30.
5. 지원 자격과 위촉 방법
 - 서울행정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.
 -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(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).
 -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[설명회와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, 최소 2회 이상 모니터(법정방청 포함) 활동을 하고 그 의견을 지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]
 - 지원자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법원장이 위촉합니다.
 - ◎ 자격상실 :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 요원에서 해촉됩니다.
6. 모니터 요원의 지위
 -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,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.
 -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되고, 모니터와 간담회 등의 절차에서 공보판사(대의업무 전담)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요청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-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.
 -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합니다.
 - 우수모니터 요원에게는 법원장 감사장이 수여됩니다.
7. 활동방법
 - (1) 모니터 의견서 제출
 - 모니터 요원은 지정기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(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)
 - 1)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
 - 2)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
 - 3) 법원시설(법정, 종합접수실 등)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
 - 4) 전화친절도,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총무과에서 메일로 고지
 - 5)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
 - 작성요령 :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.
 - 다만,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원의 법적 판단 결과(판결, 증거채부결정 등)에 대하여는 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제출된 모니터 요원의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.
 - (2) 간담회 출석
 - 모니터 요원, 법관 및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정기 간담회는 1회(2015년 11월) 예정되어 있고, 그 외에도 임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.
8. 지원 제출서류
 - 지원서 1통 (첨부 양식 참조)
 - 주민등록초본 1통
9. 접수처 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(양재동 25-3)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감사계(우편 및 팩스, E-mail 접수 가능)
·Tel 2055-8232, Fax 2055-8239, E-mail kangfree@scourt.go.kr
10.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
 - 일자 : 2015. 5. 12. 11:00
 -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,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(끝)

서울 행정 법 원 장